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1. 27 선고 2019가단2264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0. 12. 23.

판 결 선 고 2021. 1.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21. 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2018. 7.

18. 1,200만 원, 2018. 8. 10. 1,800만 원, 2019. 1. 28. 2천만 원, 2019. 1. 29. 5천만 원, 2019. 4. 11. 5천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466, 2020고단1183(병합)]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현재 위 피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위일 이후인 2019. 4. 1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1. 1. 27.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희